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제정	1973.	7.	1.	훈령	제 12호	일부개정	2005.	4.	13.	훈령	제466호
개정	1973.	9.	26.	훈령	제 19호	일부개정	2006.	3.	16.	훈령	제475호
개정	1973.	11.	2.	훈령	제 20호	일부개정	2007.	2.	5.	훈령	제490호
개정	1974.	6.	20.	훈령	제 26호	일부개정	2008.	8.	27.	훈령	제507호
개정	1975.	10.	1.	훈령	제 35호	일부개정	2009.	7.	28.	훈령	제535호
개정	1976.	7.	27.	훈령	제 46호	일부개정	2010.	2.	11.	훈령	제546호
개정	1977.	2.	14.	훈령	제 51호	일부개정	2010.	11.	2.	훈령	제555호
개정	1978.	1.	31.	훈령	제 55호	일부개정	2011.	2.	28.	훈령	제561호
개정	1980.	1.	25.	훈령	제 94호	일부개정	2011.	12.	29.	훈령	제575호
개정	1982.	8.	5.	훈령	제125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83.	9.	14.	훈령	제132호	일부개정	2012.	2.	1.	훈령	제576호
개정	1984.	6.	7.	훈령	제138호	일부개정	2012.	8.	7.	훈령	제584호
개정	1985.	11.	15.	훈령	제141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87.	1.	19.	훈령	제149호	일부개정	2014.	4.	10.	훈령	제612호
개정	1989.	5.	23.	훈령	제170호	전부개정	2017.	2.	10.	훈령	제665호
개정	1990.	1.	22.	훈령	제185호	(제명개정)					
개정	1990.	5.	24.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7.	6.	15.	훈령	제670호
개정	1990.	11.	23.	훈령	제207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2.	5.	13.	훈령	제209호	일부개정	2018.	4.	4.	훈령	제682호
전면개정	1992.	10.	15.	훈령	제212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3.	1.	21.	훈령	제214호	일부개정	2018.	11.	16.	훈령	제690호
개정	1993.	6.	1.	훈령	제218호	일부개정	2019.	10.	28.	훈령	제703호
개정	1993.	8.	24.	훈령	제225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4.	6.	28.	훈령	제242호	일부개정	2020.	7.	10.	훈령	제712호
개정	1995.	5.	19.	훈령	제264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6.	2.	29.	훈령	제287호	일부개정	2022.	1.	10.	훈령	제731호
개정	1996.	7.	5.	훈령	제297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7.	1.	24.	훈령	제309호	일부개정	2022.	12.	30.	훈령	제739호
개정	1997.	8.	7.	훈령	제31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2000.	4.	19.	훈령	제385호	일부개정	2023.	3.	22.	훈령	제740호
개정	2000.	11.	29.	훈령	제401호	일부개정	2023.	11.	22.	훈령	제745호
개정	2003.	9.	3.	훈령	제431호	일부개정	2025.	1.	24.	훈령	제758호
일부개정	2004.	12.	10.	훈령	제453호	일부개정	2025.	7.	1.	훈령	제76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의 실·국·소·원장, 실·과장 및 구의 과장에게 동 지원 담당을 지정하여 동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5.>

제2조(담당) 안양시의 실·국·소·원장, 실·과장 및 구의 과장(이하 “동담당관”이라 한다)의 지원 담당 동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름철 호우 및 태풍 시 동담당관 지원 담당 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15., 2023. 3. 22.>

제3조(지원) ① 동담당관이 담당 동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최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동담당관이 특별지시를 받아 담당 동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결과 보고 등) ① 동담당관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안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담당관이 동 지원업무 시 동 행정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동장 협조) 동장은 제3조에 따른 동담당관의 동 지원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소속직원 동참) 동담당관은 제3조에 따른 동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담당관의 소속직원을 동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4.>

제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양시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 2. 10. 훈령 제665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5. 훈령 제670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소·원장”을 “실·국·소·원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국·소·원장”을 “실·국·소·원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8. 4. 4. 훈령 제682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18. 4. 4. 훈령 제682호> 참조]

부칙 <2018. 11. 16. 훈령 제69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훈령 제703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19. 10. 28. 훈령 제703호> 참조]

부칙 <2020. 7. 10. 훈령 제712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20. 7. 10. 훈령 제712호> 참조]

부칙 <2022. 1. 10. 훈령 제731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22. 1. 10. 훈령 제731호> 참조]

④ 생략

부칙 <2022. 12. 30. 훈령 제73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22. 12. 30. 훈령 제739호> 참조]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2023. 3. 22. 훈령 제74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부칙 <2023. 11. 22. 훈령 제745호>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부칙 <2025. 1. 24. 훈령 제75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7. 1. 훈령 제7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동)의 “박달1동”을 “박달동”으로 “박달2동”을 “호현동”으로 한다.

② 「안양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현황의 “박달1동행정복지센터”를 “박달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안양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다목적복지회관 현황의 “박달2동다목적복지회관”을 “호현동다목적복지회관”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25. 7. 1.>

동담당관 지원 담당 동(제2조 관련)

구분		본청 (사업소 포함)		구
		실·국·소·원	과·담당관	
만 안 구 (14)	안양1동	복 지 문 화 국 장	복 지 정 책 과 장	행정지원과장
	안양2동		노 인 복 지 과 장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안양3동		아 동 과 장	민원봉사과장
	안양4동		여 성 가 족 과 장	
	안양5동		문 화 관 광 과 장	세 무 과 장
	안양6동		교 육 청 소 년 과 장	
	안양7동	도 시 주 택 국 장	주 택 과 장	복지문화과장
	안양8동		건 축 과 장	
	안양9동		도 시 재 생 과 장	
	석수1동		도 시 계 획 과 장	환경위생과장
			도 시 정 비 과 장	
	석수2동		신 성장 전 략 과 장	건 축 과 장
	충훈동	도 로 교 통 국 장	공 공 시 설 과 장	
	박달동		대 중 교 통 과 장	
	호현동		철 도 교 통 과 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교통복지과장
동 안 구 (17)	비산1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 도 행 정 과 장	행정지원과장
	비산2동		수 도 시 설 과 장	
	비산3동		하 수 과 장	
	부흥동	안 전 행 정 국 장	홍 보 기 획 관	민원봉사과장
	달안동		총 무 과 장	
	관양동		체 육 과 장	세 무 과 장
	인덕원동		청 년 정 책 관	
	부림동		시 민 봉 사 과 장	
			정 보 통 신 과 장	
	평촌동	환 경 국 장	공 원 관 리 과 장	복지문화과장
			녹 지 과 장	
	평안동		생 태 하 천 과 장	
			환 경 정 책 과 장	
	귀인동		기 후 대 기 과 장	환경위생과장
	호계1동		위 생 정 책 과 장	
	호계2동	기 획 경 제 실 장	고 용 노 동 과 장	
			기 업 경 제 과 장	건 축 과 장
	호계3동		정 책 기 획 과 장	
	범계동		예 산 법 무 과 장	교통복지과장
	신촌동		세 정 과 장	
	갈산동		징 수 과 장	

[별표 2] <개정 2025. 7. 1.>

여름철 호우 및 태풍 시 동담당관 지원 담당 동(제2조 관련)

구분		본청 (사업소 포함)		구	
		실.국.소.원	과·담당관		
만안구 (14)	안양1동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양2동		노인복지과장		
	안양3동		장애인복지과장		
	안양4동		아동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양5동		여성가족과장		
	안양6동		문화관광과장		
	안양7동	도시주택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세무과장	
	안양8동		주택과장		
	안양9동		홍보기획관	복지문화과장	
	석수1동		건축과장		
	석수2동		환경국장		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과장	
	충훈동	도시정비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성장전략과			
위생정책과장		건축과장			
충무과장					
박달동	정보통신과장		건축과장		
	환경정책과장				
	기후대기과장				
호현동		예산법무과장			
동안구 (17)	비산1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	
	비산2동		수도시설과장		
	비산3동		스마트도시정보과장		
			세정과장		
	부흥동	안전행정국장	-	민원봉사과장	
	달안동		-		
	관양동		도로교통국장	체육과장	세무과장
				청년정책관	
	인덕원동	시민봉사과장			
	부림동	공공시설과장		복지문화과장	
	평촌동	-			
	평안동	대중교통과장			
	귀인동	-	환경위생과장		
	호계1동	-			
	호계2동	철도교통과장			
	호계3동	기획경제실장	고용노동과장	환경위생과장	
			기업경제과장		
정책기획과장					
범계동			-	건축과장	
신촌동			-		
갈산동			징수과장		